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4. (이하 생략)</p> <p>2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4. (현행과 같음)</p> <p>25.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u>집단에너지사업법</u>」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7조(대상설비의 사후관리) ① ~ ② (이하 생략)</p> <p>③ <u>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u></p> <p>④ <u>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u></p> <p>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p>	<p>제17조(대상설비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대상설비에 대하여 <u>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u></p> <p>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u>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안)
<p>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하여 공급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이기〉 〈신 설〉</p>	<p>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과 다르게 대상설비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침 별표 2에 따른 가중치 조정 2.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 <p>⑥ 제5항제1호에 따른 가중치 조정은 최초 공급인증서 발급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되, 설비확인서 발급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시점 이후로 적용한다.</p>
<p>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5항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수수료 완납 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인증서를 인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지침 제9조에 따른 수수료납부 대상설비는 발급수수료 완납 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인증서를 인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발급신청 기한 이후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② ~ ⑧ (이하 생략)</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 7. (이하 생략)</p> <p>8. <u>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상의 제조·유통·처리내역</u>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p> <p>⑩ ~ ⑬ (이하 생략)</p> <p>⑭ 지침 별표 2 비고 제20호에 따라 국내 전력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표 2 비고 제2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⑮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4호에 따라 일조량 과다 등으로 태양광 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출력을 합한 값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태양광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p>	<p>2.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p> <p>3.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한 이후 발급수수료를 납부한 경우</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반입내역</u>(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p> <p>⑩ ~ ⑬ (현행과 같음)</p> <p>⑭ 지침 별표 2 비고 제21호에 따라 국내 전력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표 2 비고 제2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⑮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5호에 따라 일조량 과다 등으로 태양광 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출력을 합한 값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태양광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p>

현행	개정(안)
<p>된 시간단위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ESS설비의 시간단위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p> <p>㉑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율은 시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p> <p>1. ~ 2. (이하 생략)</p> <p>㉒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시설보강조치는 ESS 안전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공통안전조치 및 추가안전조치를 말한다.</p> <p>㉓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4호에 따른 출력제한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은 시간단위별로 적용한다.</p>	<p>된 시간단위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ESS설비의 시간단위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p> <p>㉑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율은 시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㉒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시설보강조치는 ESS 안전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공통안전조치 및 추가안전조치를 말한다.</p> <p>㉓ 지침 별표 2의 비고 제25호에 따른 출력제한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은 시간단위별로 적용한다.</p>
<p>제23조(공급인증서의 폐기 등) ① ~ ② (이하 생략)</p> <p>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u>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공급인증서 해당량만큼의</u>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p> <p>1. ~ 4.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3조(공급인증서의 폐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u>해당량만큼의</u> 공급인증서를 폐기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경우, 건축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u></p>

현행	개정(안)
<p>5. (이하 생략)</p>	<p>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공 급인증서 폐기 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27조(선정 공고) ① ~ ⑥ (이하 생략)</p> <p>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p>1. ~ 2. (이하 생략)</p> <p>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u>발전 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u>).</p> <p>4. ~ 5. (이하 생략)</p>	<p>제27조(선정 공고)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단, <u>발전 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 설비는 제외한다</u>).</p> <p>4. ~ 5. (이하 생략)</p>
<p>제32조(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 터의 장은 지침 제10조의2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 공고를 할 수 있다. <u>다만, 2018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시기에 맞춰 공고를 할 수 있다.</u></p> <p>② ~ ③ (이하 생략)</p>	<p>제32조(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 터의 장은 지침 제10조의2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매입 공고를 할 수 있다. <삭제></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매입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게시한다.</p> <p>⑤ 매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매입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⑥ 매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제30조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u>매매계약 등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이하 생략)</p> <p>⑦ (이하 생략)</p> <p>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 중 2019년 9월 30일 기준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p>	<p>④ 매입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에 게시하며,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항으로 이기〉</p> <p>⑤ 매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설비가 아니어야 한다. 제30조에 의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u>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설비 포함)가 아니어야 한다.</u> 지침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지침 제1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발전사업자는 제3호의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3호에 참여한 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발전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제7항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행	개정(안)
<p>지 않은 설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입공고에 따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42조(운영위원회) ① (이하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이하 생략) 4. <u>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이의처리</u> 5. ~ 6. (이하 생략) 7. 「<u>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u>」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및 출연·출자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단,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하 “발전자회사”라 한다)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이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 	<p>제42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가중치 부여 및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이의처리</u> 5. ~ 6. (현행과 같음) 7. <u>사후관리에 따른 가중치 조정</u>

현행	개정(안)
<p>우에 한함)</p> <p>8. (이하 생략)</p> <p><u>제42조의2(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①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연·출자기관 설립의 적정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비용 적정성 2.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산업기여도 3.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정부정책에의 기여도 등 4. 기타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검토 필요사항 <p>② <u>제1항제1호의 비용 적정성검토는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성검토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되, 산업 및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u></p>	<p>8. (현행과 같음)</p> <p><u>제42조의2(출자사업 적정성 검토)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출연·출자기관의 설립 및 출연·출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단,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하 “발전자회사”라 한다)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이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에 한함)</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비용 적정성 2.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산업기여도 3.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정부정책에의 기여도 등 4. 기타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검토 필요사항 <p>② <u>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평가하는 경우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검토를 완료</u></p>

현 행	개 정(안)
<p>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발전자회사 및 한남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 검토를 우선 받아야 한다.</p>	<p>하여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침 제10조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어 낙찰된 가격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재생에너지 출자사업 비용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21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5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 까지 제42조의2 출자사업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제42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p> <p>제2조(적용례) ①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폐목재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한다.</p> <p>② 별표1의 수열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는 2023년 7월 28</p>

현 행	개 정(안)
	<p>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별지 이기></u></p>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u>[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u>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별지 이기></u></p>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u>[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u> <u>[별지 제3호의2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해상풍력 예상가중치)</u> <u>[별지 제3호의3서식]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u></p>

<별 지>

현 행	개 정(안)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p> <p>(이하 생략)</p> <p>㉠ 태양광 설비</p> <p>(이하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공급인증서 가중치</th> <th colspan="2">대상에너지 및 기준</th> </tr> <tr> <th>설치유형</th> <th>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태양광 에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7</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초과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7</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야에 설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초과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p>주1) 가중치 적용 산식은 지침 별표 2의 비교 4에 따른다. 단,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임야의 적용기준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완료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며, 임야를 포함한 복수의 지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상의 지목별 설치용량 비율대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p> <p>주2)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는 1.0을 적용한다.</p> <p>지침 <u>별표2의 비교12</u>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p> <p>(이하 생략)</p> <p>(계속)</p>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p>[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제13조 관련)</p> <p>(현행과 같음)</p> <p>㉠ 태양광 설비</p> <p>(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공급인증서 가중치</th> <th colspan="2">대상에너지 및 기준</th> </tr> <tr> <th>설치유형</th> <th>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태양광 에너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8</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초과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야에 설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초과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kW부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kW초과부터</td> </tr> </tbody> </table> <p>주1) 가중치 적용 산식은 지침 별표 2의 비교 4에 따른다. 단,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임야의 적용기준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완료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며, 임야를 포함한 복수의 지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상의 지목별 설치용량 비율대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p> <p>주2)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는 1.0을 적용한다.</p> <p>지침 <u>별표 2의 비교 제15호</u>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p> <p>(현행과 같음)</p> <p>(계속)</p>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100kW미만	1.4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100kW미만																																																			
	1.4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현 행	개 정(안)
<p>(1) 건축물</p> <p>“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u>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u></p> <p>(이하 생략)</p> <p>㉒ 바이오에너지 설비</p> <p>(이하 생략)</p> <p>‘매립지가스’란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가스를 말한다.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침 별표 2의 비고 11에 따라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폐목재 분류번호(51-20-1부터 51-20-99까지) 중 51-20-06, 51-20-10의 중량 기준 비율만큼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u>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스시스템) 상의 월단위 제조·유통·처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㉓ 풍력 설비</p> <p>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 이상인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육상풍력은 KS C 8572(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해상풍력은 KS C 8573(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 미만인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KS C 8570(소형 풍력터빈)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p> <p>“건축물”이란 ①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u>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또는 건축물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부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u></p> <p>(현행과 같음)</p> <p>㉒ 바이오에너지 설비</p> <p>(이하 생략)</p> <p>‘매립지가스’란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가스를 말한다.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침 별표 2의 비고 11에 따라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폐목재 분류번호(51-20-1부터 51-20-99까지) 중 51-20-06, 51-20-10의 중량 기준 비율만큼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월단위(전력공급 직전 폐목재 반입내역이 있는 월) 반입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p> <p>㉓ 풍력 설비</p> <p>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날개에 의한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하며, <u>지침 별표 2의 비고 제8호에 따라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구분한다.</u>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 이상인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육상풍력은 KS C 8572(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해상풍력은 KS C 8573(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 미만인 풍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KS C 8570(소형 풍력터빈)에 따라 인증을 득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p> <p>(계속)</p>

현행

(계속)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산정식
육상풍력		1.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0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frac{(5 \times 2.0) + (\text{연계거리} - 5) \times 2.5}{\text{연계거리}}$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frac{(5 \times 2.0) + (5 \times 2.5) + (\text{연계거리} - 10) \times 3.0}{\text{연계거리}}$
	연계거리 15km초과	$\frac{(5 \times 2.0) + (5 \times 2.5) + (5 \times 3.0) + (\text{연계거리} - 15) \times 3.5}{\text{연계거리}}$

‘해상풍력’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계속)

개정(안)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육상풍력		1.2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0
	기본가중치	2.5

해상풍력 가중치 기본산정식

(①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②수심 복합가중치) - 기본가중치

구분		복합가중치 산정식
① 연계거리 복합가중 치	5km 이하	기본가중치
	5km 초과 10km 이하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text{총연계거리}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text{총연계거리}}$
	10km 초과 15km 이하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 + (\text{총연계거리} - 10) \times (\text{기본가중치} + 0.8)}{\text{총연계거리}}$
	15km 초과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8)] + (\text{총연계거리} - 15) \times (\text{기본가중치} + 1.2)}{\text{총연계거리}}$
② 수심복합 가중치	20m 이하	기본가중치
	20m 초과 25m 이하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text{수심} - 20)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text{수심} - 15)}$
	25m 초과 30m 이하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 + (\text{수심} - 2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8)}{(\text{수심} - 15)}$
	30m 초과	$\frac{(5 \times \text{기본가중치})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4)] + [5 \times (\text{기본가중치} + 0.8)] + (\text{수심} - 30) \times (\text{기본가중치} + 1.2)}{(\text{수심} - 15)}$

‘해상풍력’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안해상풍력’이란 해상풍력 중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간석지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방조제 내측)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속)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한전 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間)의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p>	<p>해상풍력과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p> <p>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 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 할 수 있다.</p>
<p><u><신 설></u></p>	<p>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수심”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에 따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p>
<p><u><신 설></u></p>	<p>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사항은 아래와 같다.</p> <p>①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이하 “예상가중치”라 한다)의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별지 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설비에 대한 예상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의3서식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상가중치 검토 범위에서 지침 별표 2 비고 16부터 비고 18에 따른 가중치 적용은 제외한다.</p> <p>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검토 요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로 1회에 한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상가중치 검토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 발급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계속)</p> <p>④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예상가중치 검토 요청 설비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를 발급한다. 다만, 별지 3호의2서식 및 부속서류의 누락, 허</p>

(계속)

현행

개정(안)

④ 수력 설비

(이하 생략)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력	<u>1.0</u>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될 수 없음 * 공급의무자 자체 이행분으로 활용가능

⑤ 연료전지 설비

(이하 생략)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연료전지	<u>2.0</u>	바이오가스 이용과 기타연료 이용에 동일한 공급인 증서 발급함 (단, REC 발급 시, 연료전지발전소 경계 내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력은 차감하여 발급)

위서류 제출 등 예상가중치 산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예상가중치 검토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안내받은 예상가중치는 유효하지 않다.

1.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이후 해당 설비의 용량, 설치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2. 동일 설비에 대해 예상가중치의 검토를 재요청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은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설비의 가중치는 해당 설비의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한다.

④ 수력 설비

(현행과 같음)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력	<u>1.5</u>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로부터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될 수 없음 * 공급의무자 자체 이행분으로 활용가능

⑤ 연료전지 설비

(현행과 같음)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연료전지	<u>1.9</u>	바이오가스 이용과 기타연료 이용에 동일한 공급인 증서 발급함 (단, REC 발급 시, 연료전지발전소 경계 내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전력은 차감하여 발급)

현행

(계속)

⑥ IGCC 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 따른 석탄을 가스화한 에너지 중 발전용 에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 고 사 항
IGCC	0.25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함.

⑦ 조력 설비

(이하 생략)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 기준
	고정형	2.0	
조력	1.0		기존 방조제가 있는 경우
	변동형	2.5(1~10년차) 2.0(11~30년차) 1.0(31년차~)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⑧ 폐기물에너지설비

(이하 생략)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폐기물 에너지	0.25	부생가스, IGCC,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개정(안)

(계속)

<삭 제>

⑥ 조력 설비

(현행과 같음)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 기준
	고정형	1.75	
조력	1.0		기존 방조제가 있는 경우
	변동형	2.5(1~10년차) 2.0(11~30년차) 1.0(31년차~)	기존 방조제가 없는 경우

⑦ 폐기물에너지설비

(이하 생략)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폐기물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현행	개정(안)
<p>(계속)</p> <p>'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하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만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p> <p>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㉑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p> <p>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검증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한다.</p> <p>복수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에너지원 가중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p> <p>㉒ ~ ㉔ (이하 생략)</p> <p>㉕ ESS 설비</p> <p>ESS설비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로서,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 운영시스템(PMS), 계통연계 설비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말하며, 설비확인 신청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전지(이차전지)는 한국전지산업협회에서 취득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전력변환장치(PCS)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는 설비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증유효기간 이내, 전력변환장치 시험성적서는 설비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p> <p>(계속)</p>	<p>(계속)</p> <p><u><삭 제></u></p> <p>폐기물에너지의 비율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u><삭 제></u></p> <p>㉒ ~ ㉔ (현행 ㉒ ~ ㉔와 같음)</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ESS설비의 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계속)

① 태양광설비 연계

- 가.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와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 나. ESS 가중치는 충전시간에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방전시간에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ESS설비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는 지침 별표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 다. ESS설비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시간대별 충전지에서 계통으로 방전(송전)되는 전력량과 태양광설비로부터 유입되는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계량기를 부착 및 봉인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기준
ESS (태양광연계)	5.0	'18년부터 '20년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삭 제>

주1) 충전시간(태양광설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ESS설비에 충전하는 시간) : 10:00 ~ 16:00, 방전시간(충전시간대에 ESS설비에 충전된 전력을 계통으로 방전(송전)하는 시간) : 충전시간 이외 시간

주2) ESS 가중치는 방전시간에 ESS설비에서 계통으로 송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외의 시간에 ESS설비에 입력된 전력량을 차감한 양(ESS 가중치 적용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중치는 전력계통으로 송전하는 총 전력량에서 ESS가중치 적용 전력량을 차감한 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풍력설비 연계

- 가. ESS설비는 풍력발전설비와 병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 나. 시간대별 송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설비의 전력공급계량기와는 별도로 한국전력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전력공급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풍력설비로부터의 입력전력량이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속)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급인증서 가중치</th> <th>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ESS</td> <td>4.5</td> <td>‘18년부터 ‘20년6월30일까지</td> </tr> <tr> <td>(풍력연계)</td> <td>4.0</td> <td>‘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td> </tr> </tbody> </table> <p>가중치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p>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기준	ESS	4.5	‘18년부터 ‘20년6월30일까지	(풍력연계)	4.0	‘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p>(계속)</p>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세부기준															
ESS	4.5	‘18년부터 ‘20년6월30일까지															
(풍력연계)	4.0	‘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p>㉓ 수열설비</p> <p>해수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p> <p>나.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을 받은 열계량 장치 등을 설치하여 수요처 사용열량의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p>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지침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급인증서 가중치</th> <th>참고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수열</td> <td>1.5</td> <td>·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td> </tr> </tbody> </table> <p>※ 공급 인정량(수요처 사용열량)을 발전량(MWh)으로 환산하여 공급인증서 발급</p>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열	1.5	·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	<p><삭 제></p> <p>㉓ 수열설비</p> <p>해수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p> <p>가. 공급의무자가 자사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직접 개발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p> <p>나. 「계량에 관한 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을 받은 열계량 장치 등을 설치하여 수요처 사용열량의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p> <p>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2호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급인증서 가중치</th> <th>참고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수열</td> <td>1.5</td> <td>·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td> </tr> </tbody> </table> <p>※ 공급 인정량(수요처 사용열량)을 발전량(MWh)으로 환산하여 공급인증서 발급</p>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열	1.5	·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열	1.5	·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참고사항															
수열	1.5	·발전량(MWh)=[공급 인정량(Gcal) × 0.1] ÷ 0.23															

현행

(계속)

14 주민참여형 설비

(이하 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¹⁾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3,000kW 이하	1.5	1.5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초과부터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1}{\text{용량}}$	$\frac{3,000 \times 1.5 + (\text{용량} - 3,000) \times 1.2}{\text{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15 지자체참여형 설비

(이하 생략)

개정(안)

(계속)

11 주민참여형 설비

(현행과 같음)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¹⁾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12 지자체참여형 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계속)</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계속)</p> <p>㉓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p> <p>지침 제3조제26호에서 정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26 379 1962 646"> <thead> <tr> <th>에너지원</th> <th>주기기</th> </tr> </thead> <tbody> <tr> <td>태양광</td> <td>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td> </tr> <tr> <td>풍력</td> <td>풍차 및 전력변환장치</td> </tr> <tr> <td>수력</td> <td>수차 및 발전기</td> </tr> <tr> <td>연료전지</td> <td>연료전지 및 전력변환장치</td> </tr> <tr> <td>바이오</td> <td>보일러(발전기포함) 및 연소장치</td> </tr> </tbody> </table> <p>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 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 할 수 있는 경우, 지침 별표 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26 845 1962 954"> <thead> <tr> <th>구분</th> <th>공급인증서 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td> <td>(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td> </tr> </tbody> </table> <p>단, 전력량계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26 1117 1962 1209"> <thead> <tr> <th>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times \frac{\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용량}}{\text{전체설비용량}}$ </td> </tr> </tbody> </table>	에너지원	주기기	태양광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풍력	풍차 및 전력변환장치	수력	수차 및 발전기	연료전지	연료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바이오	보일러(발전기포함) 및 연소장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times \frac{\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용량}}{\text{전체설비용량}}$
에너지원	주기기																		
태양광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풍력	풍차 및 전력변환장치																		
수력	수차 및 발전기																		
연료전지	연료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바이오	보일러(발전기포함) 및 연소장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times \frac{\text{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용량}}{\text{전체설비용량}}$																			

현행

[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전력판매처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거래소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용량(kW)	허가설치	면적(m ²)	모듈	건축	
		발전사업허가번호(자가용설비 제외)	계약번호(발전기코드)	년 월 일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사용전검사일				
	계통구분	<input type="checkbox"/> 1인입 <input type="checkbox"/> 별도인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한전고객번호	□□-□□□□-□□□□	
	담당자명	부서/직책				
	연락처	이메일				
	발전방식	태양광 (<input type="checkbox"/> ESS)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등 활용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사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기존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수상태양광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일반부지 활용 <input type="checkbox"/> 동일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분할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주민참여						
<input type="checkbox"/> 소형태양광 매입제도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풍력 (<input type="checkbox"/> ESS)		<input type="checkbox"/> 육상풍력 <input type="checkbox"/> 해상풍력 - 연계거리 : () km 가중치(○고정형○변동형)				
바이오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목재칩 <input type="checkbox"/> 매립지가스 <input type="checkbox"/> 흑액 <input type="checkbox"/>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input type="checkbox"/> Bio-SRF <input type="checkbox"/> 기타 바이오(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수력/조류/조력	<input type="checkbox"/> 수력 <input type="checkbox"/> 조류 <input type="checkbox"/> 조력 - 기존방조제 ○ 有 ○ 無 가중치 (○ 고정형 ○ 변동형)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료전지 <input type="checkbox"/> JGCC <input type="checkbox"/> 부생가스 <input type="checkbox"/> 지열-가중치(○고정형○변동형) <input type="checkbox"/> 수열 <input type="checkbox"/> 자가용발전					
재원	총투자비	백만원	자체조달 등 (일반용자, PF포함)	백만원		
			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	백만원		
			무상지원금	국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설비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전력판매처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거래소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				
	용량(kW)	허가설치	면적(m ²)	모듈	건축	
		발전사업허가번호(자가용설비 제외)	계약번호(발전기코드)	년 월 일		
	사용전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사용전검사일				
	계통구분	<input type="checkbox"/> 1인입 <input type="checkbox"/> 별도인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한전고객번호	□□-□□□□-□□□□	
	담당자명	부서/직책				
	연락처	이메일				
	발전방식	태양광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등 활용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주용도 사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기존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수상태양광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일반부지 활용 <input type="checkbox"/> 동일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분할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주민참여						
<input type="checkbox"/> 소형태양광 매입제도 참여여부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풍력		<input type="checkbox"/> 육상풍력 <input type="checkbox"/> 해상풍력 - 연계거리 : () km <input type="checkbox"/> 수심 : () m				
바이오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 <input type="checkbox"/> 목재칩 <input type="checkbox"/> 매립지가스 <input type="checkbox"/> 흑액 <input type="checkbox"/>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input type="checkbox"/> Bio-SRF <input type="checkbox"/> 기타 바이오(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수력/조류/조력	<input type="checkbox"/> 수력 <input type="checkbox"/> 조류 <input type="checkbox"/> 조력 - 기존방조제 ○ 有 ○ 無 가중치 (○ 고정형 ○ 변동형)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료전지 <input type="checkbox"/> 지열-가중치(○고정형○변동형) <input type="checkbox"/> 수열 <input type="checkbox"/> 자가용발전					
재원	총투자비	백만원	전력량 분리 계량 여부	<input type="checkbox"/> 분리 <input type="checkbox"/> 미분리		
			전환설비 신규 설치용량(신설)	kW		
			교체되지 않은 기존 설비용량(미교체)	kW		
			총 용량(신설+미교체)	kW		
재원	총투자비	백만원	자체조달 등 (일반용자, PF포함)	백만원		
			공급의무자조달 (SPC만 해당)	백만원		
			무상지원금	국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위와 같이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설비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현 행	개 정(안)																																																			
(계속) <input type="checkbox"/> 시공업체 (계약금액순 상위1개만 기재) (이하 생략) <input type="checkbox"/> 소요자금 내역 (이하 생략) <input type="checkbox"/> 주요 설비 개요 (해당 에너지원에 한하여 작성) 1. ~ 7. (이하 생략) 8. 부생가스 설비	(계속) <input type="checkbox"/> 시공업체 (계약금액순 상위1개만 기재)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소요자금 내역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주요 설비 개요 (해당 에너지원에 한하여 작성) 1. ~ 7. (현행과 같음) 8. 부생가스 설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사 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기력(전기) <input type="checkbox"/> 복합(전기) <input type="checkbox"/> 열병합(전기+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보일러</td> <td style="text-align: center;">형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배열회수보일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사/제조국</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산연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효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델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력(kg/cm²)</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증기온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발량(t/h)</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터빈</td> <td style="text-align: center;">형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가스터빈 <input type="checkbox"/> 증기터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사/제조국</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산연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격출력(kW)</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전수(rpm)</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발전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사/제조국</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산연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격출력(kW)</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압(kV)</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량(MVA)</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송전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압(kV)</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로규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회전수</td> <td></td> <td></td> </tr> </tbody> </table>	확 인 사 항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력(전기) <input type="checkbox"/> 복합(전기) <input type="checkbox"/> 열병합(전기+열)			보일러	형식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배열회수보일러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효율	() %	연료	모델명		압력(kg/cm ²)	증기온도(℃)		증발량(t/h)	터빈	형식	<input type="checkbox"/> 가스터빈 <input type="checkbox"/> 증기터빈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회전수(rpm)	발전기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전압(kV)	용량(MVA)			송전설비	전압(kV)		선로규격	회전수			<p><삭 제></p>
확 인 사 항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력(전기) <input type="checkbox"/> 복합(전기) <input type="checkbox"/> 열병합(전기+열)																																																			
보일러	형식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배열회수보일러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효율	() %	연료																																																	
	모델명		압력(kg/cm ²)																																																	
	증기온도(℃)		증발량(t/h)																																																	
터빈	형식	<input type="checkbox"/> 가스터빈 <input type="checkbox"/> 증기터빈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회전수(rpm)																																																	
발전기	제조사/제조국		생산연도																																																	
	정격출력(kW)		전압(kV)																																																	
	용량(MVA)																																																			
송전설비	전압(kV)		선로규격																																																	
	회전수																																																			

현 행

개 정(안)

(계속)

9. IGCC 설비

(계속)

9. IGCC 설비

확 인 사 항		내 용	
공기 분리 설비		산소 및 질소 공급 방법	<input type="checkbox"/> 자체생산 <input type="checkbox"/> 외부공급
		분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심랭법 <input type="checkbox"/> PSA법 <input type="checkbox"/> 막분리법
		1일 생산 용량	산소 () 톤 / 질소 () 톤
가스화 설비	연료공급 설비	연료 종류	<input type="checkbox"/> 석탄 <input type="checkbox"/> 잔사유 <input type="checkbox"/> 석탄+잔사유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급 방식	<input type="checkbox"/> 건식 <input type="checkbox"/> 습식
		연료공급 용량	() 톤/일
	가스화기	가스화기 공정사/수량	() / () set
형식		<input type="checkbox"/> 분류층 <input type="checkbox"/> 유동층 <input type="checkbox"/> 고정층	
		합성가스 생산 열량	() Gcal/h (HHV 기준)
가스 정제 설비	집진설비	집진 방법	<input type="checkbox"/> Cyclone <input type="checkbox"/> Ceramic Filter <input type="checkbox"/> Metal Filter <input type="checkbox"/> Wet Scrubber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산성가스 제거 설비	공정 기술명	<input type="checkbox"/> 건식공정 () <input type="checkbox"/> 습식공정 ()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발전 설비	가스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모델명/수량	() / () set
		정격출력	() MW (ISO조건)
	스팀터빈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모델명/수량	() / () set
		정격출력	() MW
	발전기	제조국/제조사/생산연도	() / () / ()
		모델명/수량	() / () set
	HRSG	형식/수량	<input type="checkbox"/> 조연 <input type="checkbox"/> 비조연 <input type="checkbox"/> 2압식 <input type="checkbox"/> 3압식 () set
	발전량	총 발전량/순 발전량	() MW / () MW
발전효율	Gross/Net (HHV)	() % / () %	

<삭 제>

현행	개정(안)																								
<p>(계속)</p> <p>※ 첨부서류</p> <p>1. 공통 제출서류 ① ~ ⑨ (이하 생략) <u><신 설></u></p> <p>2. 에너지원별 제출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에너지원</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태양광</td> <td>(이하 생략)</td> </tr> <tr> <td>풍 력</td> <td>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td> </tr> <tr> <td>바이오 폐기물</td> <td>(이하 생략)</td> </tr> <tr> <td>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ESS, 수열</td> <td>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ESS설비는 인증서 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1부.</td> </tr> <tr> <td>기 타</td> <td>(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p>3. 기타 제출서류(해당사항 관련서류 제출) ① ~ ⑤ (이하 생략)</p> <p>※ 제출서류 양식 :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이하 생략) ※ 제출서류 양식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이하 생략) ※ 제출서류 양식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이하 생략) ※ 제출서류 양식 :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이하 생략)</p>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이하 생략)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바이오 폐기물	(이하 생략)	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ESS, 수열	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ESS설비는 인증서 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기 타	(이하 생략)	<p>(계속)</p> <p>※ 첨부서류</p> <p>1. 공통 제출서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여부 확인서 1부.</p> <p>2. 에너지원별 제출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에너지원</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태양광</td> <td>(이하 생략)</td> </tr> <tr> <td>풍 력</td> <td>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및 수심 확인이 가능한 자료(측량자료, 전자해도 등)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td> </tr> <tr> <td>바이오 폐기물</td> <td>(이하 생략)</td> </tr> <tr> <td>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삭제> 수열</td> <td>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삭 제></td> </tr> <tr> <td>기 타</td> <td>(이하 생략)</td> </tr> </tbody> </table> <p>3. 기타 제출서류(해당사항 관련서류 제출) ① ~ ⑤ (이하 생략)</p> <p>※ 제출서류 양식 :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 (현행과 같음) ※ 제출서류 양식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대상 확인서 (현행과 같음) ※ 제출서류 양식 :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현행과 같음) ※ 제출서류 양식 :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현행과 같음)</p>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이하 생략)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및 수심 확인이 가능한 자료(측량자료, 전자해도 등)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바이오 폐기물	(이하 생략)	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삭제> 수열	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삭 제>	기 타	(이하 생략)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이하 생략)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측량자료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바이오 폐기물	(이하 생략)																								
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ESS, 수열	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ESS설비는 인증서 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기 타	(이하 생략)																								
에너지원	제출서류																								
태양광	(이하 생략)																								
풍 력	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서 1부. - 해상풍력설비에 한함 ② 설치도면(발전설비 사양서 포함) 1부. -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해안선이 표기되어야 하며, 해안선과 발전기 중앙부의 직선거리 및 수심 확인이 가능한 자료(측량자료, 전자해도 등) 첨부</u>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바이오 폐기물	(이하 생략)																								
수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조류, <삭제> 수열	① 발전(열공급)설비 사양서 1부. ② 설치도면 1부. ③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사본 1부. - 인증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운전 및 모니터링 계획서 1부. ⑤ <삭 제>																								
기 타	(이하 생략)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별지 제3호의3서식]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번호</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호(법인명)</td> <td style="width: 10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전화번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발전소현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발전소명</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가용량(kW)</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발전사업허가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상가중치</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p>위와 같이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요청 설비에 대하여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p> </td> </tr> <tr> <td colspan="4" style="font-size: small;"> <p>※ 참고사항</p> <p>1. 해당 설비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p> <p>2. 해당 설비의 연계거리 및 수심에 따른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로 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가중치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p> </td> </tr> </table>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발전소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허가용량(kW)			발전사업허가번호			예상가중치			<p>위와 같이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요청 설비에 대하여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p>				<p>※ 참고사항</p> <p>1. 해당 설비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p> <p>2. 해당 설비의 연계거리 및 수심에 따른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로 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가중치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p>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서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발전소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허가용량(kW)																																						
	발전사업허가번호																																						
	예상가중치																																						
<p>위와 같이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 검토요청 설비에 대하여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p>																																							
<p>※ 참고사항</p> <p>1. 해당 설비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됩니다.</p> <p>2. 해당 설비의 연계거리 및 수심에 따른 공급인증서 예상가중치로 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가중치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p>																																							